##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0 ~ 9

제출	출연원	일일	2010. 2. 11.
제	출	자	거창군수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개정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35호, 2010.1.4.) 및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촉진 지구 외에 개별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내・외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함임.

#### 2. 주요내용

- 가. 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위원회 규정순서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회의 간사를 변경하며,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
  - 간사 : 지역경제담당주사 →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
  - 위촉위원의 임기 : 2년
-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 (안 제13조).
  - 20명 초과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월 100만원까지 지원
-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함 (안 제14조).
  - 20명 초과 1명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지원 → 월 100만원 까지 지원
- 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 기업에 지원하는 입지지원, 고용·교육훈련·시설보조금 규정을 준용 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원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안 제19조).
  -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 채용 상시고용규모 20명 이상
  - →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 채용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 마. 도 외에 소재하는 기업본점의 관내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을 변경함 (안 제20조).
  - 본점 이전 기준을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는 경우로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개별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0조의3 신설).
  -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개별 입주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 지원기준(제19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를 하거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논리에 맞게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0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및 「건축법」 제2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6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수요 발생시 필요 예산 편성
-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예산담당)
-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2) 입법예고(2009. 12. 29. ~ 2010. 1. 18.)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규정된"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제조업외"를 "제조업 외"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을 "상시고용인원을 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상시 고용인원"을 "상시고용인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공장용지 안에서"를 "공장용지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나목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계산"을 "회계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6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라"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투자유치위원회"를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중 "지역경제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설치·운용하는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을 "출연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려는"으로,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민원처리의 특례"를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상시고용규모가"를 "상시고용인원이"로 하고,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영위"를 각각 "경영"으로 한다.

제10조 중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동등한"을 "같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는"을 "경우"로, "분양가의 차액만을 지원하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분양가의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월 50만원"을 "월 1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업당"을 "기업당 지원총액이"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명당"을 "초과인원 1명당"으로,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를 "월 100만원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국인 기업등록"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을 "공공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중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를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조제7항"을 "영 제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군수는"을 "군수가"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를 "도 외 소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3만3천 제곱미터"를 "3만3천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외"를 "도 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 지구 내에서"를 "지정 지구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군수는 제2항에 따라"로, "기업에게"를 "기업에 대하여"로, "산업자원부장관이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후단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업에게"를 "기업에 대하여"로 한다.

- 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외에"를 "도 외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9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를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1일 상시고용 규모가"를 각각 "상시고용인원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5백억"을 "5백억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분담자금"을 "분담경비"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24조 중 "인정되는 자"를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를 "포상할 수 있으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b>2조(정의)</b> (본문 생략)	<b>제2조(정의)</b> (본문 현행과 같음)
1. "외국인투자" <b>라 함은 「외국인투자</b>	1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u>제1항제4호에</u> 규정한 것을 말한다.	에서
2. "외국인투자기업" <u>이라 함은</u> 법 제2조	2 <u>이란</u>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 <u>이라 함은</u> 법 제	3 <u>이란</u>
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투자가" <u>라 함은</u> 법 제2조제1항	4 <u>란</u>
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b>이라 함은</b>	5이란 <u>「외국인투자</u>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이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규정된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 <u>이라 함은</u> 군내에서	6 <u>이란</u>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3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u>제조업 외</u>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	
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	
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고용보조금" <u>이라 함은</u> 공장·물류	7 <u>이란</u>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 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상시고용인원을 채용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u> </u>
기천에는 포스티크 권한기.	•

현 행	개 정 안
8. "교육훈련보조금" <b>이라 함은</b> 공장	8이란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상시고용인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u>0 144 0 1: 12</u>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	
한다.	
9. "시설보조금" <b>이라 함은</b> 공장시설	9이란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	
을 말한다.	
10. "공장시설" <u>이라 함은</u> <u>공장용지</u>	10 <u>이란</u> <u>공장용지에서</u>
<u>안에서</u>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11. "물류시설" <u>이라 함은</u> 「물류시설의	11 <u>이란</u>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4호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연구시설" <b>이라 함은</b> 「조세특례	12 <u>이란</u>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13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u>란</u>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 (처체되 가 O)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변 생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계산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다. (생 략) 14.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해당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나. <u>같은</u>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16.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생 략) ⑤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 제5항과 같음)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ul><li>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주사가 된다.</li><li>⑥ (생 략)</li></ul>	<ul><li>⑥</li><li>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li><li>⑦ (현행 제6항과 같음)</li></ul>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위원회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의 위원 수당 등은 「거창군 위원회 실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u>할 수 있다.</u>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u>투자</u>	결상남도지사
<u>유치진흥기금</u> 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용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하는 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u>이라 한다)</u> <u>출연할</u>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사용하고자 하는</u>	<u>사용하려는</u>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u>경상남도지사</u>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 <u>민원처리의 특례</u> ) (생 략)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u>특례</u>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제8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본문 생략)	③ (본문 현행과 같음)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1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	
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	
업지원서비스사업을 <u>영위</u> 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u>상시고용규모가</u>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2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 자동차, 항공우	
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	
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	
는 산업을 <u>영위</u> 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 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레10코(크 0 키히) 이크이트리키셔스 비	케10코(그 0 기 이)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세3조세2왕의 규정 및 <u>'경쟁담도 중</u>  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u>「거창군 중소기업</u> 우서기그 서치 및 으용즈레,
	<u> </u>
경이는 마에 따다 독대기업과 <u>중등만</u>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제12조(입지지원) ①
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	
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② 제1항에 따라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	
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	
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만을 지원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
	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del>호                                    </del>	지면적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	
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	
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	
야 한다.	
제13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제13조(고용보조금) ①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법 제14조제4항에	<u>범위에서</u>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새로운	②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	
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	
우 6개월 내에서 초과 고용인원 1명당	
<u>월 50만원</u>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월 100만원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기간	③
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u>기업당</u>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	<u>기업당 지원총액이</u>
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u>3년 이상</u> 고용	<u>보</u> 조금을 지원받은
을 유지하여야 한다.	<u>날부터 3년 이상</u>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u>①</u> 군수는 외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
국인 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중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	
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수 있다.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	②
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내	
에서 <u>1명당</u>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u>이하로</u>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③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u>외국인</u>	외국인
<u>기업등록</u>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	<u>투자기업 등록</u>
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	
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	
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u>「근로자</u>	④ <u>「근로자</u>
<u>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u> 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u>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u>	<u>공공직업훈련시설</u>
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u>을 포함한다)</u>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현 행	개 정 안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	
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군	
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 를 말한다.	
글 글인거. 	•
제15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u>외국기</u>	
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	
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b>외국인</b>	
<u>투자기업에게</u>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시설	<u>투자기업에</u> <u>범위에서</u>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u>범위 안에서</u> 기업당 2억원까	<del></del>
지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연차별 투자</u>	
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	
시작일(공장을 증설한 경우에는 시설이	
<u> </u>	
<u>초과하지 못한다.</u>	
제15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	제15조의2(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	①
인투자환경 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u>안에서</u>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본문 생략)	② (본문 현행과 같음)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 지원	
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	
퍼센트 내	

현 행	개 정 안
2. <u>영 제2조제7항</u>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u>군수는</u>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2. <u>영 제2조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u> <u>의 규정 군수가</u>
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u>범위</u>	<u>범위</u>
<u>안에서</u> 2억원 내	에서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군수는 <u>경상남도(이하 "도" 라한다)외</u>	① 도 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	
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②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u>산업단지</u>	<u>일반산업단지</u>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u>3만</u>	<u>3만</u>
<u>3천 제곱미터</u> 이상이어야 한다.	<u> 3천제곱미터</u>
③ (본문 생략)	③ (본문 현행과 같음)
1. <u>도외</u>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1. <u>도 외</u>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u>지정 지구 내에서</u>	2 <u>지정지구에서</u>
공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u>&lt;신 설&gt;</u>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② 제1항에 따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	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투자금액이 30
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
한다.	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u>제1항에 따라</u> 지원대상이 되는 <u>기업</u>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업에
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식경제
<u>의 범위 안에서</u> 분양가의 30퍼센트까	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
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의 범위에서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u>영위</u> 하여야 한다.	<u>경영</u>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u>기업</u>	<u>④ 기업에</u>
<u>에게</u>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및	<u> 대하여</u>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	
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제20조(이전보조금) ① 도 외에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	
전하거나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에는 예산의 <u>범위 안에서</u> 이전보조금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을 국내기업	②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	
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u>범위 안에서</u> 기업당 2억원까	<u>범위에서</u>
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③ 제1항에 따라 본점을 관내로 이전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	하는 경우
하여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	
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30만원을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본점과 공장을 동반하여 이전하
	는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 10명을 초과
	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제20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u>「국가균형발전 특별법」</u>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제17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0조의3(개별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외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19조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하여 <u>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u>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본문 생략)	② (본문 현행과 같음)
1.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	1
달러 이상이거나 <u>1일 상시고용 규모가</u>	<u>상시고용인원이</u>
1,500명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u>5백억</u> 이상	2 <u>5백억원</u>
이거나 <u>1일 상시고용 규모가</u> 300명 이	<u>상시고용인원이</u>
상인 경우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신청 등)
① ~ ②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u>분담자금</u> 의	③ 분담경비-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	
야 한다.	

현 	개 정 안
제23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23조의2(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	①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u><b>반환하도록</b></u>	<u>반환하게</u>
명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허위,</u>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	2. <u>거짓이나</u>
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24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군수는 국・내외	제24조(투자유치 성공 보상)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u>인정되는 자</u> 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 안</u>	인정되는 자(개인이나 단체·기관·기업·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	공무원을 포함한다) 범위에서
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u>포상할 수 있으며</u>